

기고

김 용 호 여수소방서장



차갑고 건조한 날씨속 화재위험 높아

최근들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한파특보 등 기상변화가 심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난방기구나 아궁이 등 화기취급 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경북 구미의 한 아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0.2ha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또한, 같은 날 여수지역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 불티가 인접 빨간

에 옮겨붙어 장롱 등 가재도구가 소실되어 9백 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람까지 자주 부는 시기에는 불씨 하나라도 자칫 인근 가연물에 옮겨붙어 연소 확대 위험이 높은 만큼, 가정이나 야외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2천 5백 여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은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콘센트나 전선 등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사용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쓰레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산불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 등에서 아궁이를 취급하거나,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기를 취급할 때는 주변에 연소확대 위험요소인 가연물을 제거하고, 인근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민간의 사택에 대비해야 한다.

요즘처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자주 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큰 불이 발생하기 쉽다. 화기를 취급할 때 편리성으로 인해 부주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자.

社 說

운전자 보호책 마련돼야 한다

음주 승객에 의한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여러 건 올랐다. 최근 술에 취한 승객이 60대 여성 택시 운전사를 마구 때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날 10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김모 씨가 운전사 이모 씨(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하는 사람에겐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써 5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음주 폭행 가해자에게 '주취감정' 등의 사유를 적용해 가볍게 처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택시 운전사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입혔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서단 김의지 변호사는 "이런 법행을 엄벌하려고 가중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지만 구속될 정도가 아니라면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말했다. 운전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도 차량 주차 중에 발생한 폭행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운전사 양 씨와 60대 여성 운전사 이 씨 모두 택시가 멈춰 있을 때 폭행을 당했다.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행 가해를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택시 운전사들이 음주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을 바꾸기 위해 '택시 내 격벽' 설치 등이 필요하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3월13일 조합장선거,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 평가 받기를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안타깝지만 조합장선거 하면 금품선거를 떠올릴 정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30여일 앞둔 지금까지는 예전과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들도 많다.

우선,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제도가 없으며,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배부, 전화통화, 문자발송, 정보통신망이용 외에는 선거운동방법이

금지되어 있다.

농민회 등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는 반면,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인 조합원은 1세대당 1명에 불과하며, 선거구역이 읍·면단위로 좁아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로 개인별 성향 파악이 쉽고, 당선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선거운동이 제한적이고 연고위주 투표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후보자가 금품선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와 비슷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그 배우자 등은 임기부

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인이 이들로부터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다면 그 제공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깨끗한 선거는 운동장에서 두 사람이 각자 한발씩 뚝고 목표물 향해 달리는 삼각경기와 같다.

후보자, 유권자가 3각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품선거가 근절되려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내가 속한 조합이 특정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번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운동방법 안에서 정당당당하게 표심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선거인인 조합원은 연고위주보다 오로지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하는 깨끗한 선거, 공직선거보다 위법행위 없이 치러진 역대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김영덕 / 무안군선관위 홍보주무관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如松之盛

如松之盛

▷ 뜻: 솔 나무같이 푸르러 성(盛)함은 군자(君子)의 절개(節飭·節介)를 말한 것이다.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the Korea National Pension Corporation.